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74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정청래 · 장경태 · 민형배
박찬대 · 이성윤 · 김영환
한민수 · 신영대 · 권향엽
양문석 · 주철현 · 김 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 평정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음.

독일 등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가 개최되고, 평정 결과가 법관 전체에 공표됨.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 · 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포함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 중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을 “따라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로 하고, 제4항 중 “외에 근무성적과”를 “외에 법관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근무성적과”로 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2.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법원 내부 구성원 5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u>한다</u> .	① ----- ----- ----- ----- ----- -- <u>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u> 를 둔다.
<u><신 설></u>	1. <u>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u>
	2. <u>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u>
	3. <u>법원 내부 구성원 5명</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u>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u>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③ ----- ---- <u>따라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u>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u>외에 근무성적과 자</u>	④ ----- ----- <u>외에 법관평가위원</u>

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u>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근</u> <u>무성적과</u> ----- -----.
---------------------------------	--